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 | 기존 | 변경 |
|---|------|--------------------------|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 10만원 |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 | | |
|--|-----|---------------------------------|
|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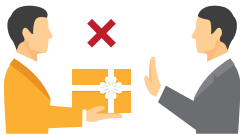
| | | |
|--|-----|----------------------|
|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 3만원 기존과 같음 |
|--|-----|----------------------|

*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 그 외 선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 선물 + 그 외 선물
3만원 7만원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축의금·조의금 5만원 + 화환·조화 5만원
축의금·조의금 3만원 + 화환·조화 7만원

축의금·조의금 7만원 + 화환·조화 3만원